

## 제 5 장 경쟁

### 제 5.1 조 기업과 관련된 경쟁 규칙

1. 당사국들은 반경쟁적 기업행위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.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는 그것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, 이 협정의 적절한 운용과 양립하지 아니한다.

2. 이 협정의 목적상, “반경쟁적 기업행위”는,

가. 당사국들의 영역의 전체에서 또는 그 실질적 부분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하나 이상 기업의 남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모든 합의, 사업자 단체의 결정과 기업 간 담합 관행으로서 경쟁의 방해·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이나 효과로 하는 것을 말한다. 그리고

나.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무역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다. 그러한 행위는 민간 또는 공공 기업에 의하여, 또는 그 기업에게 부여된 특정업무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기업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다.

3.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기업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4. 당사국들은 반경쟁적 기업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경쟁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. 그러한 목적으로, 당사국들은 관련된 집행활동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고 정보를 교환한다. 당사국은 자국법상 비밀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아니된다.

5. 요청이 있을 때, 당사국들의 경쟁당국 및/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은 반경쟁적 기업활동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. 요청받은 당사국은 그

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.

6.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 영역에서의 반경쟁적 기업행위가 당사국들 간 무역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는 경우, 협의는 요청이 있을 때 공동위원회에서도 개최된다. 협의는 요청이 접수된 지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. 해당 당사국들은, 공동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하고 해당 당사국들이 그 대상이 된 행위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재정립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, 모든 지원과 정보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한다.